『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』에 대한 **제 안 설 명**

- □ 존경하는 박환희 위원장님!
 그리고 선배·동료 의원님 여러분!
 안녕하십니까?
 국민의힘 서초구 제4선거구 최호정 의원입니다.
- □ 『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』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- □ 지금부터 『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』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- □ 먼저 조례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,
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서울특별시의회 회의 운영을 위해 입법 미비 사항을 보완하고,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에 따라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.
- □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,

여러 위원회에 걸친 안건 심사 시, 연석회의 방식을 활용할수 있도록 세부 운영 규정을 신설하고, 교육감이나 위원회제출 의안을 철회하는 경우에도 세부 철회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.

- □ 또한 누구나 회의규칙을 이해하기 쉽도록 어려운 용어, 일본식 용어, 복잡한 문장구조 등을 순화하고 바로잡았 습니다.
- □ 존경하는 박환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!
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구로서 서울특별시의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의사 운영을 위해서는, 근간이 되는 규칙에 부정확 및 오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. 이를 자구적으로 정비하고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는 노력의 일환으로이번 개정안을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.
- □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의 조례 발의 취지를 이해하셔서 운영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, 이상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